

1. 개정 이유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

나. 정기검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확보

-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 사용방법 명확화(안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안 별표 22 제2호)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 매연 포집시설의 관리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안 별표 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2

-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4 제2호 및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수검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별표 25 제9호가목)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9조제2항(입법예고 : '24.7.26~9.4)

-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외 대상인 소방용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6 제1호가목4))

* 「소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의 이륜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자동차	소형·중형·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000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000ppm 이하	
		202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1,000ppm 이하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매연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에는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매연 포집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2 제2호의 검사항목 제2호의 검사방법란 2)가) 중 “2,000rpm”를 “500~2,200rpm”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1,500rpm”를 “500~1,700rpm”로 하며, 같은 란 검사기준 마목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검사기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정지가동 상태)위치에
--	-------------------------

	놓는다.
사. 등화장치 등 부속장치는 가동을 정지할 것	전조등, 난방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단, 주간 주행등과 같이 소등할 수 없는 구조는 제외)를 확인

별표 22 제2호에 제3호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1) 전단 중 “측정대상자동차”를 “측정대상 이륜자동차”로, “가속페달을 밟지”를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cm”를 “배기관 내에 시료채취관의 채취구 끝단을 배기구로부터 30cm”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배기구를 밀봉하는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 연결장치 내에 시료채취관의 채취구 끝단을 30cm 이상 삽입한다”로 한다.

- 4)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는 각각 측정한다, 이때 어느 하나의 배기관에서 운행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별표 23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장비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가목 중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연 포집시설

4.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나.의 자격란 나목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25 제9호가목 중 “전후 각각”을 “전 90일 이내, 후”로 한다.

별표 26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용 자동차(「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1호가목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개정규정과 연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